

꿈나무의 집 2025년 본 예산총칙

제 1 조 (목 적) 2025년 예산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거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회 계 년 도)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 3 조 (출 납 기 간) 2025년도 예산에 속하는 세입,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예산의 규모) 2025년도 꿈나무의 집의 예산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명세는 별첨 세입, 세출 예산과 같다.

1. 꿈나무의집 사업

구 분	2024년 2차 추경 예산	2025년 본 예산	증 감	비 고
총세입액	564,662,546	527,625,000	△37,037,546	* 증감 - 2024년 입소비 인상
총세출액	564,662,546	527,625,000	△37,037,546	
잔 액	0	0	0	

단, 동일 항내의 목간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운영위원장 (또는 시설의 장)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.

제 6 조 (차입한도액) 2025년 예산 일시차입 한도액은 10,000,000원으로 한다.

제 7 조 (예 비 비)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총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예비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.

제 8 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지정후원금, 수익자 부담 경비 등은 추가 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 및 후원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